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 (의안 설명서)

- 소집일시: 2024년 3월 21일(목) 오전 9시
- 소집장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58  
지하 2층 강당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께,

항상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주)LX인터내셔널  
주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당사는 2024년 3월 21일 제71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소집 공고에 공시한 각 안건에 대한 주주 여러분들의 이해를  
높이고자 안건별 상세 설명을 정리하여 송부 드리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안건이나 주주총회 행사 등에 관련하여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당사 IR팀([lxi\\_ir@lxintl.co.kr](mailto:lxi_ir@lxintl.co.kr), 02-6984-5505)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에도 회사의 발전과 지속적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주주 여러분과 소통하는 (주)LX인터내셔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 2. 21  
대표이사 윤 춘 성

# 제71기 정기주주총회 안건

제1호 의안: 제7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사내이사 민병일 선임의 건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1호 의안: 제7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당사 제71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는 기 공시된 주주총회 소집 공고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부 감사가 완료된 최종 감사보고서는 3월 13일 공시 예정입니다.

당기 배당 금액은 1주당 1,2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3년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자원 시황 및 물류 운임의 하향 안정화로 전년 대비 순이익이 77%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기대치 등을 감안, 전년보다 상향된 배당성향을 적용하여 올해 총 432억원(주당 1,200원, 배당성향 37%, 시가배당률 3.8%)을 배당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2차전지 핵심광물사업 등 신규 투자에 대한 자원 마련, 재무 안정성 유지 및 중·장기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일정 수준의 자금을 내부 유보함과 동시에 적절한 수준의 배당을 받을 주주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주주환원 계획 수립 및 주주가치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 배당현황 (최근 5개년 사업년도)

구분	주당 배당금	주주환원		연결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순이익	배당성향	시가배당률
		배당금 총액	자사주 매입 금액			
71기	1,200원	432억원	-	1,171억원	37%	3.8%
70기	3,000원	1,079억원	-	5,152억원	21%	7.3%
69기	2,300원	827억원	-	3,501억원	24%	8.6%
68기	400원	144억원	397억원	2,976억원	18% <sup>1)</sup>	1.6%
67기	300원	116억원	-	286억원	41%	2.0%

1) 자사주 매입금액 포함

##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23.1월 금융위원회는 배당액이 확정된 이후에 배당을 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당사는 주주친화정책 강화 및 정부 당국의 권고사항을 적극 고려하여 배당기준일을 기존 매 결산기 말에서 이사회 결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아울러 결산기 말을 기준으로 하던 신주 등의 배당기산일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배당기준일 현재 발행된 주식에 대하여 동등배당 함을 명확히 정관에 반영하여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또한 당사는 다양한 경영환경에 원활히 대응하고 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해 당사 정관 전반을 재검토하였으며, 현재 전자증권제도 도입으로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이 불필요해진 바, 주주명부 폐쇄 절차 관련 규정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금번 정관 변경을 통하여 내년부터 주주 여러분께서는 배당액을 먼저 확인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하실 수 있게 되며, 앞으로도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 [첨부]정관개정(案) 신규대비표 상세

현 행	개 정	비 고
<p>제9조의 2 (우선주의 내용과 수)</p> <p>⑦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누적된 미배당분 및 그 후의 우선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u>존속기간 만료 시 우선주식이 보통주식으로 전환 되는 경우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 10 조 제 4 항의 규정을 준용한다.</u> (1998. 3. 28 본조 신설)</p>	<p>제9조의 2 (우선주의 내용과 수)</p> <p>⑦ 회사는 우선주식의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존속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만료와 동시에 우선주식은 보통주식으로 전환된다. 그러나 위 기간 중 소정의 우선배당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정의 누적된 미배당분 및 그 후의 우선배당을 완료할 때까지 존속기간은 연장된다. <b>(2024. 3. 21 본항 개정)</b></p>	<p>- 배당기준일 관련 상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p> <p>- 개정 전: 각종 주식의 배당 관련, 매 결산기말을 배당기준일로 준용</p>
<p>제10조 (신주의 인수권)</p> <p>④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b>(1996.2.29 본항 개정)</b></p>	<p>제10조 (신주의 인수권)</p> <p>④ <b>(2024. 3. 21 본항 삭제)</b></p>	<p>- 개정 후: <b>주식 발행시기에 관계 없이 동등배당 가능</b></p>

## [첨부]정관개정(案) 신규대비표 상세

현행	개정	비고
<p>제10조의 3 (전환사채의 발행)</p> <p><u>⑤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주식으로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 직전 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u> (1989.2.27 본항 개정)</p>	<p>제10조의 3 (전환사채의 발행)</p> <p><u>⑤ 제 1 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회사는 전환 전에 지급시기가 도래한 이자에 대하여만 이자를 지급한다.</u> (2024. 3. 21 본항 개정)</p>	
<p>제10조의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u>⑤ 제 1 항의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있어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납입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한다.</u> (1996. 2. 29 본항 개정)</p>	<p>제10조의 4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p> <p><u>⑤ (2024. 3. 21 본항 삭제)</u></p>	<p>- 배당기준일 관련 상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p> <p>- 개정 전: 각종 주식의 배당 관련, 매 결산기말을 배당기준일로 준용</p> <p>- 개정 후: 주식 발행시기에 관계 없이 동등배당 가능</p>
<p><u>(신설)</u></p>	<p><u>제10조의7 (동등배당)</u></p> <p><u>본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u> (2024. 3. 21. 본조 신설)</p>	

## [첨부]정관개정(案) 신규대비표 상세

현 행	개 정	비 고
<p><b>제16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b></p> <p>① <u>본 회사는 매결산기 말일의 익일로부터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및 그 말소를 정지한다.</u> (2005. 3. 14 본항 개정)</p> <p>② 본 회사는 매결산기 말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하여금 당해 결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권리를 행사하게 한다. (2005. 3. 14 본항 신설)</p> <p>③ 본 회사는 임시주주총회 등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미리 공고한 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임시 정지하거나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2005. 3. 14 본항 개정)</p>	<p><b>제16조 (기준일)</b></p> <p>① (2024. 3. 21 본항 삭제) ② (좌동) ③ (좌동)</p>	<p>- 전자등록제도 도입으로 주주명부 폐쇄 절차 불요하여 관련 조항 삭제</p> <p>- 개정 전: 매결산기 말일의 익일 ~ 1월 31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말소와 신탁재산의 표시 및 그 말소를 정지</p> <p>- 개정 후: <b>삭제</b></p>



## [첨부]정관개정(案) 신규대비표 상세

현 행	개 정	비 고
<p>제41조 (배당)</p> <p>① 배당은 매결산기말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질권자에게 금전 또는 주식으로 하기로 한다.</p> <p>단, 동 배당 외에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해 금전으로 이익을 배당할 수 있다. (1999. 2. 25 본항 개정)</p> <p>② 전항의 배당에 대하여 배당실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배당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를 본 회사의 소득으로 한다. (1999. 2. 25 본항 개정)</p>	<p>제41조 (배당)</p> <p>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 재산으로 할 수 있다. (2024. 3. 21 본항 개정)</p> <p>② (좌동)</p> <p>③ 본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제 1 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4. 3. 21 본항 신설)</p> <p>④ 본 회사는 동조 제3항에 따른 배당 외에 영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상법 소정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이 때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024. 3. 21 본항 신설)</p>	<p>- 배당기준일 관련 상법 개정에 따른 규정 정비</p> <p>- 개정 전: 매 결산기 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배당 가능</p> <p>- 개정 후: 이사회 결의로 배당기준일 결정 가능</p>
<p>부칙 제4조 (시행일)</p> <p>본 정관은 2023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p>	<p>부칙 제4조 (시행일)</p> <p>본 정관은 202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p>- 부칙 변경</p>

## 제3호 의안: 사내이사 민병일 선임의 건

사내이사로 임기가 만료되는 민병일 이사를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요 경력	최대주주와의 관계
민병일	1966.11.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대 언어학 학사</li> <li>▪ (現) (주)LX인터내셔널 CFO ('19~)</li> <li>▪ (前) LG전자(주) 금융담당 ('12~'18)</li> </ul>	계열회사 ((주)LX인터내셔널) 임원

사내이사 민병일은 현재 당사 CFO로서, LG전자(주) 및 당사에서 5년여간 CFO 보직 수행을 통해 입증된 재무적 성과와 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 재무 관리 및 조직의 지속적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자 합니다.

- 3년간 이사회 출석률: 100% ('21년~'23년 총 25회)

## [첨부] 이사회 구성 및 구성원별 전문 분야

※ 이사회 구성 (24.3.21 현재 기준, 주주총회 이후 이사회 구성 변동 없음)

구분	성명	최초 선임일	성별	주요 경력	출석률 <sup>1)</sup>
사내 이사	윤춘성	'19.3.15	남	(주)LX인터내셔널/ 대표이사	96%
	민병일	'19.3.15	남	(주)LX인터내셔널/ CFO	100%
사외 이사	권오준*	'23.3.23	남	변호사권오준법률사무소/ 변호사	100%
	채수일*	'20.3.26	남	(前)보스턴컨설팅그룹 한국사무소/ 공동대표	100%
	양일수*	'19.3.15	남	(前)이정회계법인/ 파트너	96%
	손란	'22.3.24	여	손스마켓메이커즈/ 대표	86%
기타 비상무이사	최성관	'23.3.23	남	(주)LX홀딩스/ CFO	100%

1) 최근 3개년 이사회 출석률

\* 감사위원회 위원

## ※ 이사회 구성원별 전문분야

성명	주요 전문분야						
	금융	경제	리스크 관리	회계	경영	글로벌	법률
윤춘성					●	●	
민병일	●			●			
권오준			●				●
채수일		●			●		
양일수			●	●			
손란					●	●	
최성관	●		●				

## 제4호 의안: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당사는 '24년 이사 보수한도를 '23년과 동일한 40억원으로 승인 받고자 합니다. '23년은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은 40억원의 한도 내에서 약 28억원을 집행하여, 약 70%의 집행 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이사 보수한도는 이사의 진급, 성과급 집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최대 금액의 규모이며, 이사의 실제 지급 보수는 당해 연도 재무성과를 비롯하여 회사의 지속 가능 성장을 위해 설정한 평가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향후에도 이사의 직위, 담당 역할 및 성과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보수 지급 금액 및 산정기준에 대한 상세 내역은 3월 13일 공시 예정인 『제 71기 사업보고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 ※ 이사 보수한도

구 분	'22년		'23년		'24년(案)
	한도	실적	한도	실적	
이사 보수 (실적/한도)	30억원	21억원 (69%)	40억원	28억원 (70%)	40억원
이사 총수	7인				

### ※ 이사 · 감사의 보수지급기준

(백만원, 명)

구분	지급근거	보수체계	보수결정 시 평가항목	보수총액	인원 수
사내 이사	집행임원 인사관리 규정	급여(기본급/역할급) + 상여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기이사의 보수는 급여 및 상여금으로 구성</li> <li>- 급여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이사 보수한도 내에서 직위, 직무 등을 고려하여 임원인사 관리규정(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위별 정액 지급</li> <li>- 상여금은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한도 내에서 목표 달성도, 재무성과, 사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임원인사 관리규정(이사회 결의)에 따라 차등 지급</li> </ul>	2,458	2
사외 이사	사외이사 보수 지급 기준	매월 정액 지급	사외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한도 내에서 당사 경영실적, 대외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	294	4
기타 비상무 이사	-	-	-	-	1
합계	-	-	-	2,752	7